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. 9. 20 선고 2022가단169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

변 론 종 결 2023. 7. 19.

판 결 선 고 2023. 9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목록 기재 가설건축물(도면 표시. 1.2.3.4.5,6,1.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(ㄱ)에 설치된 판넬조 판넬 지붕 면적 34㎡ 지상의 가설건축물)을 철거하고, 토지를 인도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, 2021. 10. 21.부터 위 가설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1일 54,454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사안의 개요

가. 사실관계

갑 1, 2호증,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(2020. 6. 17. 사망, 이하 망인)는 2018. 2. 7. 그녀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전 24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)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)을 설정해 준 사실, 원고와 E은 2021. 10. 21.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(이 법원 F)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지분을 각각 매수한 사실, 망인의 상속인 피고와 G은 2021. 3. 23.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298 사건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나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가설건축물(이하 ‘이 사건 건축물’)을 취득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 2021. 10. 21.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일 1,936원,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천안시 서북구 H와 I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금 1일 52,5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 ①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과 피고의 상속지분을 각각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.

② 갑 9호증(항공사진), 을 2,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,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은 이유 있다(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행정청의 철거명령 대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).

③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감정절차 또한 신청한 적이 없는 점과 위 ①항을 고려할 때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와 부당이득 부분 주장사실이

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김원목

별지목록

1. 토지

소재지번 : 충남 천안시 서북구

지 목 : 전

면 적 : 248㎡

2. 무허가가설건축물

소재지번 : 충남 천안시 서북구

지적도면 : 1.2.3.4.5.6.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, 판넬조판넬지붕
(창고형). 면적 34㎡

별지 도면



